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추진방안

2016. 7. 1.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추진방안	2
1. 주요내용	2
2. 세부추진방안	3
가. 기능(조회 및 잔고이전·해지)별 추진내용	3
나. 채널(온라인 및 은행창구)별 추진내용	5
III. 기대효과	6
IV. 향후 추진계획	7

I. 추진배경

- '15년말 국내은행의 개인계좌 2.3억개(609조원)*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가 절반에 육박(1억개, 44.7%)
 - * 국내은행 계좌 2.4억개, 1,264조원 중 법인계좌는 0.1억개(3.6%), 655조원
- 특히, 전체 개인계좌 중 1/10 수준(2천7백만개, 11.6%)이 잔액 "0"원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불필요한 계좌임

국내은행 개인계좌 현황('15년말 기준)

	총계	비활동성 계좌	잔고		
			0원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계좌수 (만개)	22,967	10,260	2,673	9,896	9,973
성인 1인당 평균	5.9개	2.6개	0.7개	2.5개	2.5개
잔고 (조원)	609.1	14.4	0	0.9	1.2
성인 1인당 평균	1,517만원	36만원	0	2.4만원	3.1만원

- 이와 같이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가 다수 존재하는 것은 소비자가 거래를 실질적으로 종료해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 이로 인해 소비자, 은행, 금융거래에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
 - ① (소비자) 비활동성 계좌 보유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아는 경우라도 잔고이전·해지를 위해서는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 *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지 않은 은행의 경우(미사용기간이 1년 경과시 자동해지되는 경우 포함)
 - ② (은행) 계약이 종료된 계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비용 발생
 - ③ (금융거래) 비활동성 계좌가 본인 모르게 금융사기에 악용되거나, 원치 않게 착오송금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등 거래 안전성 저해
- ➔ 국민의 재산관리 효율성 및 금융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TF*를 구성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을 추진

* 실무T/F(금융위·금감원·금결원·은행권) 8회 개최('16.2~5월) → 공개 세미나 개최(5.30, 금융연구원) → 금발심 보고(6.21) → 제5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보고(7.1)

II. 추진방안

1 | 주요내용

- (개요) 금년 12월부터 소비자가 본인의 **소 은행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잔고이전·해지'까지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 잔고이전·해지 서비스는 일정기간(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대상으로 제공
 - * 최종입출금일(또는 만기일) 이후 1년 이상 경과
 - ** 1단계('16.12.2일) : 30만원 이하 → 2단계('17.3.2일) : 50만원 이하
 - 잔고이전·해지는 **온라인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여 도입하고, **은행창구에서는 제한적으로 시행(자행 계좌에 한하여 시행*)**
 - * 은행창구에서 타행 계좌의 잔고이전·해지까지 허용시, 은행간 경쟁과열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 (채널) 온라인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사용이 곤란한 소비자(고령층 등)를 위해 **은행창구 서비스도** 제공
 -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를 통해 서비스 제공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주요내용

구분	계좌조회 기능	잔고이전·해지 기능
온라인	○ 본인의 소 은행계좌 정보 제공	○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대상
은행창구	○ 자행 : 온라인과 동일한 수준의 은행계좌정보 제공 ○ 타행 - 활동성 계좌 : 계좌보유여부만 제공 - 비활동성 계좌 : 계좌정보 제공(잔액정보 제외)	○ 자행 계좌에 대해서 가능

2 세부추진방안

가 기능(조회 및 잔고이전·해지)별 추진내용

① 계좌조회

□ 소비자는 본인의 은행권 계좌현황을 한 눈에 조회

- (요약정보) 은행권 계좌를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내역 제공

계좌 조회시 제공되는 요약정보 내용(온라인)

은행명	구분	수시 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상세 정보
A은행	활동성계좌	2개	1개	-	1개	1개	조회
	비활동성계좌	1개	1개	2개	-	-	
B은행	활동성계좌	2개	-	-	-	-	조회
	비활동성계좌	2개	2개	-	-	-	

- 제외 계좌: 법인·임의단체·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 계좌와 펀드, 방키슈랑스 등 은행이 판매대행하는 계좌 및 보안계좌는 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에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계좌

- (상세정보) 개별계좌의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최종입출금일, 상품명, 계좌번호, 잔액, 부기명 등 세부내역까지 제공

개별계좌 조회시 제공되는 상세정보(온라인)

구분	주요내용
지점명	지점명 확인을 통해 가입경로를 유추
개설일	개설시점에 따라 가입경로를 유추
만기일	만기해지 또는 재예치 필요성 판단
최종입출금일	최종으로 입금 및 출금한 날짜(조회·이자결산일 제외)
상품명	상품명으로 계좌 가입사유를 유추
계좌번호	전체 계좌번호를 표시
잔액	현재 시점의 잔액
부기명	소비자가 부여한 계좌별명

② 잔고이전·해지

□ (이용방법)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본인 계좌에 대하여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잔고이전·해지 가능

* 은행 창구를 통해서는 자행 계좌에 대해서만 잔고이전·해지 가능

- 대상계좌는 조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

* 금융회사는 통상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이용을 제한(인터넷뱅킹 자동이체, 휴면카드 등)

-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전액 이전하거나 미소금융재단에 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는 자동해지됨

- 잔고이전은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회수 및 해지를 용이하게 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잔고 전액을 이전(또는 기부)토록 함



□ (단계적 시행) 시행초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잔고이전·해지를 1단계(30만원 이하)→2단계(50만원 이하) 등 단계적으로 확대·시행

*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식)의 충전 등 지급결제 한도를 50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도 50만원)

잔고이전·해지의 단계적 시행

구분	1단계('16.12.2일)	2단계('17.3.2일)
범위	잔액 30만원 이하	잔액 50만원 이하
대상 계좌수	9,896만개(96.4%)	9,973만개(97.2%)
대상 금액	9,569억원(6.6%)	1조2,414억원(8.6%)

*()은 개인계좌 중 비활동성계좌 1억260만개, 금액 14조3,929억원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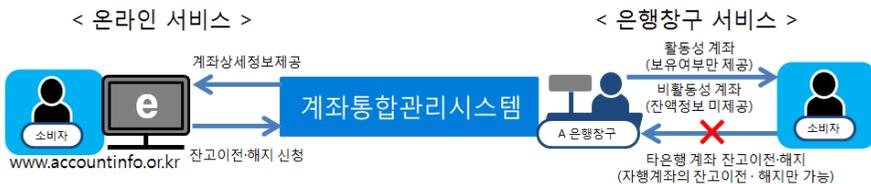
나 채널별(온라인 및 은행창구)별 추진내용

① 온라인 서비스

- 소비자는 「계좌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는 추후 제공 예정
- (조회) 활동성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의 은행권 **소** 계좌에 대한 **현황정보**를 확인 가능
- (잔고이전·해지)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잔고이전·해지 서비스를 이용 가능

② 은행창구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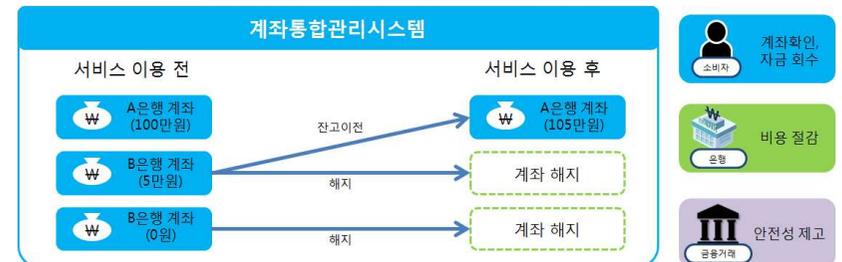
-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 소비자를 위해 거래은행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
- (조회) 타행 활동성 계좌는 계좌 보유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타행 비활동성 계좌는 계좌상세정보(잔액제외)를 제공*
 - * 은행 직원이 소비자의 은행거래 전체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소지가 있어 은행창구에서의 타행계좌 조회범위를 제한
- (잔고이전·해지) 자행계좌*에 대한 잔고이전·해지서비스 제공
 - * 타행은 '조회기능'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직접 방문토록 안내



Ⅲ. 기대효과

- (소비자) 은행거래를 하는 모든 소비자들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있고 있던 **계좌**의 존재여부 및 잔액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 * '15년말 현재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는 1억260만개, 14.4조원에 달함(성인 1인당 36만원 수준)
- 이 중 소액 계좌에 대해서는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잔고이전하여 회수*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됨
 - * 비활동성 계좌로서 잔액 50만원 이하의 계좌('15년말 현재 9,973만개, 1.2조원)
- ➔ **일상 금융생활의 편의**와 **개인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은행) 비활동성 계좌의 정리를 통해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계좌관리 비용도 절감**
 - 소비자의 자발적 해지를 통해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0"원 계좌 **2,673만개**를 정리* 가능(성인 1인당 0.7개 정리)
 - * 한편 은행권은 일정기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0"원 계좌의 경우 자동해지될 수 있도록 약관 개정 추진 중
- (금융거래) 불필요한 비활동성 계좌의 해지를 통해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
 - 또한, 원치 않게 착오송금의 당사자(송금수취인)가 되어 소송에 휘말리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 가능

계좌통합관리시스템 도입시 기대효과



IV. 향후 추진계획

- ① 시스템 구축 및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 '16.7월 ~ 10월
 -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행과 금융결제원간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은행창구 서비스를 위한 전산개발은 온라인 시행('16.12.2일) 이후 순차 추진
 - 서비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편*을 사전에 파악 및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 * (예) 3년만기 정기예금의 만기금액이 자동입금될 계좌(수시입출금식 계좌)의 해지
- ② 시범서비스 실시 : '16년 11월
 - 은행직원들이 사전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실제 체험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할 사항을 발굴·제시토록 시범서비스 실시
- ③ 서비스 시행 : 온라인('16.12.2일) → 은행창구('17.3.2일)
 - (온라인 시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계좌 조회와 잔고이전·해지서비스 제공
 - (은행창구 시행) 은행창구를 통해 계좌조회서비스(자행·타행 계좌대상) 및 잔고·이전해지(자행계좌 대상)서비스를 제공

계좌통합관리시스템 추진일정

구분	'16년						'17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시스템 구축	온라인 시스템구축 →				온라인 시행	은행창구 시스템구축 →			은행창구 시행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									
시범서비스 실시						←→				

참고 1

은행권 개인계좌 현황('15년말 기준)

- 은행권 개인계좌는 총 229.7백만개이며 잔액은 609.1조원
 - 계좌수는 수시입출금식 계좌(200.2백만개) > 예적금(23.2백만개) > 신탁(3.1백만개) > 외화계좌(2.5백만개) > 당좌계좌(0.7백만개) 순
 - 잔액은 예적금(282.5조원) > 수시입출금식 계좌(264.4조원) > 신탁(49.5조원) > 외화계좌(11.8조원) > 당좌계좌(0.9조원) 순
- 개인계좌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 이상 경과된 계좌는 총 102.7백만개이며 잔액은 14.4조원

은행권의 개인계좌 현황('15년말 기준)

(단위 : 백만개, 조원)

구분	전체계좌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은행권 수신 상품	원화	수시입출금식	200.2	264.4	97.5	5.8
		당좌예금	0.7	0.9	0.5	0.0
		예적금	23.2	282.5	2.2	6.4
	원화예금 합계		224.1	547.8	100.2	12.2
	외화예금		2.5	11.8	1.8	1.5
	예금 합계		226.6	559.6	102.0	13.7
	신탁		3.1	49.5	0.7	0.7
은행권 수신 상품 합계		229.7	609.1	102.7	14.4	

참고 2

서비스 보안성 강화방안

① 본인확인 절차 강화

-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소비자의 가입신청 없이 서비스 이용 동의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안정성과 범용성이 확보된 본인확인 절차 필요**

➔ '공인인증서 + 휴대폰인증'의 2중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

*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서비스 이용 가능

② 개인정보보호 강화

-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소비자의 **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중요**

➔ 소비자가 계좌조회를 요청하는 순간 계좌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가 **각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실시간 전달받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 소비자의 계좌정보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조회 은행에 원천적으로 저장되지 않도록 개발 예정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계좌현황은 1회성(휘발성) 정보**로 정보집적에 따른 **유출 가능성과 각 은행의 보유·활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